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91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이재강 · 허성무 · 이훈기
박지혜 · 김동아 · 백혜련
소병훈 · 김우영 · 안도걸
조계원 · 이기현 · 양부남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
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
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
전기지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로 하고, 같
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
기지

나. 그 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지역을</u> -----.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 나. 그 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
<u><신설></u>	

3. ~ 6. (생략)	<u>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u> <u>급유·수리 등을 위하여</u> <u>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u> <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구역</u> 3. ~ 6. (현행과 같음)
---------------------	---